

行한다를 1995年 8月 1일부터 施行한다로 修正動議案을 提案합니다.

○委員長代理 李元局 金泰雄委員으로부터 修正動議案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金泰雄委員의 修正動議案에 대하여 再請 있으십니까?

(「네, 再請합니다」하는 委員 있음)

再請이 있으므로 正式 議題로 성립되었습니다.

(議事棒 3打)

金泰雄委員의 修正動議案에 대하여 다른 意見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本 案件에 대하여 金泰雄委員이 提案하신 修正動議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委員 여러분,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시다 하므로 議事日程 第2項 서울特別市交通誘發負擔金輕減等에關한條例案은 金泰雄委員께서 提案하신 修正動議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

(參 照)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의8제2항·제9조의15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담금”이라 함은 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라 함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을 이용하는 승용차통행량을 말한다.
3. “의무감축방안”이라 함은 영 제9조의9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교통량감축방안을 말한다.

4. “추가감축방안”이라 함은 의무감축방안 이외에 부담금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는 교통량 감축방안을 말한다.

제3조(단위부담금의 조정) 영 제9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이상인 시설물은 각종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2.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미만인 시설물과 각종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이고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10대 미만인 시설물은 각종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

제4조(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영 제9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은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중 의무감축방안이나 추가감축방안을 시행하는 시설물로 한다.

제5조(부담금의 경감율등) ① 다음 각호에 의한 의무감축방안을 이행하여 100분의 20 이상 교통량이 감축되었다고 인정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1.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할 경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가. 주차요금은 시설물안에 근무하는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모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 나. 이용자를 위한 무료주차권 배부나 무료주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주차요금은 주변 공영주차장요금의 100분의 50 이상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 라. 종사자에 대한 주차장이용을 돕기 위하여 주차비 보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p>2. 승용차 10부제 운영을 실시하여야 한다.</p> <p>3. 종사자에 대하여 승용차함께타기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p>가. 승용차함께타기를 전담하는 통근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p> <p>나. 승용차함께타기의 조편성을 위하여 승용차이용자를 대상으로 조편성계획을 운영하여야 한다.</p> <p>4. 의무감축방안은 1년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추가감축방안은 연간 9개월 이상 이행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이내에서 다음 각호에 의한 경감율을 적용한다.</p> <p>1. 통근버스를 운영할 경우 종사자수 분에 통근버스 좌석수에 대한 비율</p> <p>2. 승용차 5부제를 운영할 경우 100분의 10</p> <p>3. 승용차 2부제를 운영할 경우 100분의 20</p> <p>4. 시차출근제를 실시할 경우 일상 출근시간인 09:00를 전후하여 1시간 차이마다 100분의 5</p> <p>5. 월 20,000원 상당의 대중교통승차권을 종사자의 100분의 75 이상에게 구입·지급할 경우 100분의 10</p> <p>③ 의무감축방안을 실시하지 않고 추가감축방안을 실시할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6조(통근관리인 선임등)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근관리인 선임·해임·변경신고서를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통근관리인이 변경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통근관리인은 일상근무시간 중 100분의 25이상을 통근관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④ 통근관리인에 대한 기록유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통근관리인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p>	<p>⑤ 시장은 년 1회 이상 관할구역내 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통근관리인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시기는 매년 6월로 한다.</p> <p>제7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계획서 시행일 제출한 날부터 적용한다.</p> <p>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 분기 15일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교통량감축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p> <p>제8조(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부담금의 경감을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9조(부담금의 경감결정등) 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시행한 교통량감축이행결과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경감신청내역을 확인·조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경감을 결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부담금경감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0조(미이행시 조치사항)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미이행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p> <p>1. 의무감축방안을 미이행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부담금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p>
---	--

<p>2. 추가감축방안을 미이행한 경우 미이행한 감축방안에 대해서만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11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통근관리인 선임신고처리 등 조치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의 접수·처리와 이행여부 확인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설치·운영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결정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조치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다음 페이지에 계속)</p>
---	--

<별지 1호서식>

선 임
 통근관리인 해 임 신고서
 변 경

시 설 개 요	명 칭		면 적	
	주 소		대 표 자	
	입주업체수		일 상근무자	
선 임 해 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전 화 번 호	
	직 위		선·해임일자	
변 경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전 화 번 호	
	직 위		변 경 일 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15 및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 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근관리인 선임·해임·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소속
성명

직위(직명)
(인)

귀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 5호서식〉

교 통 유 발 부 담 금 경 감 신 청 서						
시 설 개 요	명 칭				면 적	
	주 소				대 표 자	
	주차장규모	총 대	평면주차장 지하주차장 입체주차장	대 대 대	입주업체수 일상근무자	
신 청 경 감 율		총 %				
산 출 기 초		의무감축방안		%		
		추가감축방안		계	%	
				통 근 버 스 운 영	%	
				승 용 차 5 부 제	%	
				승 용 차 2 부 제	%	
				시 차 출 근 제	%	
				대중교통이용현금보조	%	
<p>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15 및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대표자) 소속 직위(직명) 성명 (인) 귀 하</p>						
210mm×297mm (신문용지 54g/m ²)						

<별지 6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경감율결정통보서					
시 설 개 요	명 칭			면 적	
	주 소			대 표 자	
	주차장규모	총 대	평면주차장 지하주차장 입체주차장	대 대 대	입주업체수 일상근무자
결 정 사 항			신 청 사 항	결 정 사 항	
	경 감 율		%	%	
	의 무 감 축 방 안		%	%	
	추 가 감축방안	소 계		%	%
		통 근 버 스 운 영		%	%
		승 용 차 5 부 제		%	%
		승 용 차 2 부 제		%	%
		시 차 출 근 제		%	%
대중교통이용현금보조		%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9조의15 및 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율결정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구청장 (직인)					
귀 하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